##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

제정 2010. 12. 31 조례 제1747호 일부개정 2013. 8. 1 조례 제1936호(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) 일부개정 2015. 9. 30 조례 제2117호(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 일부개정 2016. 9. 26 조례 제219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전부개정 2016. 11. 18 조례 제2202호 전부개정 2017. 6. 20 조례 제2259호 일부개정 2020. 6. 19 조례 제2624호 일부개정 2024. 7. 4 조례 제3123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법령과의 관계) 광명시 시세(이하 "시세"라 한다)의 부과·징수(부과·징수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)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(이하 "도세"라 한다)와 시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,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「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」(도세의 부과·징수로 한정한다)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(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)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·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제4조(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「자동차관리법」제48조 및 「자동차등록령」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광명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(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광명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다른 시·군·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

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0. 6. 19〉

- 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〈개정 2024. 7. 4〉
  -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5조의2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. [본조신설 2020. 6. 19]
- 제5조의3(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)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또는 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"이의신청인등"이라 한다)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(이하 "선정대리인"이라 한다)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
  -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「광명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-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-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·불복청구인·대리인 지정일자·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6. 19]

- 제5조의4(선정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)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  -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7 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  - 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·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  -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6. 19]

- 제6조(교부금전의 예탁) 시장은 채권자,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 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금고에 예탁한다.
- 제7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 칭은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.
- 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〈2017. 6. 20 조례 제2259호 전부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)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9조제3항 중 "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65조"를 "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 43조"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광명시시계 기본 조례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〈2020. 6. 19 조례 제2624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정대리인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2,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부칙〈2024. 7. 4 조례 제3123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